
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8월 26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2. 제안이유

○ 의장·부의장 결선투표 결과에 대한 당선자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단서 조항 신설(제8조제3항)

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

- 당 초 :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
- 변 경 : 최다선 의원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최다선 의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.
 1.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재직기간이 긴 의원
 2.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: 그 중 연장자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71조,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

5. 예고기간

- 예고기간 : 2020. 8. 26. ~ 8. 31.(6일간)
-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규칙안 : 붙임

7. 의견 제출

-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3항의 “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”를 “**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**”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최다선의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.

제8조제3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**
- 2. 재1호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: 그 중 연장자**